

재단법인 행복마을 청소년행복명상코치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

제 1장: 자격의 명칭, 종목, 및 등급과 직무내용

제 1조(목적)

이 규정은 재단법인 행복마을에서 시행하는 청소년행복명상코치의 민간자격검정(이하 “검정”이라 한다.)의 업무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민간자격의 취득)

본 (재)행복마을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.

제 3조(자격의 명칭, 종목 및 등급)

이 규정은 (재)행복마을에서 시행하는 전문가, 1급, 2급의 자격검정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조(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)

- ① 청소년행복명상코치자격은 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삶에 있어서의 행복의 원리를 깨닫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가도록 돕는 프로그램 진행 및 교육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.
- ②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자격명	등급	등급별 직무내용
청소년 행복 명상 코치	전문가	삶의 5대 원리, 화합론, 수심론, 행복명상을 강의하고 행복명상코칭과 관련된 교육과 코칭에 관한 실습을 책임 및 주관할 수 있다. 1. 2.급 소지자를 교육하고 코칭하며 프로그램의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.
	1급	삶의5대원리, 화합론, 수심론, 행복명상을 강의하고 행복명상코칭과 관련된 교육과 코칭에 관한 실습을 책임 및 주관할 수 있다.
	2 급	-삶의5대원리, 화합론, 수심론, 행복명상 프로그램 진행자의 진행을 보조 하는 직무를 수행한다.

제 2장: 검정기준, 검정직무수준, 방법, 과목, 응시자격

제 5조 (검정기준과 검정직무수준)

자격종목	등급	검정기준	수준
청소년 행복 명상 코치	전문가	행복명상코칭 분야의 최고급 수준으로 청소년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과학적이고 구체적 기술을 코칭함으로써 청소년을 위한 행복명상코칭에 관한 강의 및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	석사
	1급	행복명상코칭 분야의 중급 수준으로 청소년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과학적이고 구체적 기술을 코칭함으로써 청소년을 위한 행복명상코칭에 관한 강의 및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급 수준	학사
	2급	행복명상코칭 분야의 초급 수준으로서 개인 또는 집단의 행복명상코칭에 관한 강의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초급 수준	초대졸

제 6조 (검정방법 및 검정과목)

등급	검정방법	검정 과목(분야 또는 영역)	합격기준
전문가	필기	-삶의 다섯 가지 원리 1문항 -화합을 위한 의사소통법 3문항 -마음 알고 다루고 나누기 3문항	평균 70점 이상
	실기	1급 행복명상코칭 지도 능력과 자질 검증 (태도, 내용, 표현, 피드백 능력)	평균 70점 이상
1급	필기	-삶의 다섯 가지 원리 1문항 -화합을 위한 의사소통법 2문항 -마음 알고 다루고 나누기 2문항	평균 70점 이상
	실기	-삶의 다섯 가지 원리 강의 시연 및 코칭 -화합을 위한 의사소통법 강의 시연 및 코칭 -마음 알고 다루고 나누기 강의 시연 및 코칭	평균 70점 이상
2급	필기	-삶의 다섯 가지 원리 1문항 -화합을 위한 의사소통법 1문항 -마음 알고 다루고 나누기 1문항	평균 70점 이상

제 7조 (응시자격)

등급	응시자격
전문가	- 연령: 해당없음 - 학력: 해당없음 - 기타사항: 행복마을 연수원 주관의 청소년캠프 1회(27h), 중급과정 1회(27h), 엔카운터 1회(27h), 기본과정 1회(45h)인 총 126시간을 이수한자 - 1급을 획득하고, 요청 수련을 이수한 자
1급	- 연령: 해당없음 - 학력: 해당없음 - 기타사항: 행복마을 연수원 주관의 청소년캠프 1회(27h), 강사과정1회(10h), 엔카운터 1회(27h), 기본과정 1회(45h)인 총 109시간을 이수한자 - 2급을 획득하고, 요청 수련을 이수한 자
2급	- 연령: 해당없음 - 학력: 해당없음 - 기타사항: 행복마을 연수원 주관의 청소년캠프 1회(27h), 강사과정1회(10h), 엔카운터 1회(27h), 기본과정 1회(45h)인 총 109시간을 이수한자

제 3장: 자격검정인력 및 관리

제 8조(자격검정 관리 위원회)

- ① (재)행복마을은 검정관리위원회와 위원장을 두어 본 자격규정에 의거하여 자격검정 및 자격심사의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, 위원장 이하 검정기획담당, 출제, 채점 담당, 검정관리 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.

제 9조(자격검정 조직의 업무 분장)

①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
2. 원서접수·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
3. 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·관리에 관한 사항
4. 검정업무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
5.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6. 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자격 검정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
② 출제·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검정의 필기·실기 시험문제의 출제,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
3.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

③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원서접수·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
2.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·관리에 관한 사항
3. 검정의 집행(수험원서 접수, 감독위원 배치, 시험장설치, 검정 시행 등)에 관한 사항
4.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
제 4장: 원서 접수 및 수수료

제10조 (검정안내)

- ① (재)행복마을은 검정의 종목, 수험자격, 제출서류, 검정방법, 시험과목, 검정일시,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할 수 있다.
- ② (재)행복마을의 모든 직원들은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.

제11조(수험원서 등)

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원서접수)

- ① 원서접수, 검정수수료(이하 “수수료”라 한다) 수납업무는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원서는 (재)행복마을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, 반신용 봉투(등기요금 해당 우표 첨부, 주소기재 등) 1매를 동봉한 것에 한한다.
- ④ 수험표는 원서접수 시에 교부한다. 다만, 우편접수자에게는 우편으로 우송 할 수 있고, 단체접수자는 접수종료 후 교부할 수 있다.
- ⑤ 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.

제13조(수수료)

-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③ 수수료는 현금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우편환 증서, 자기앞 수표는 현금으로 간주한다.
- ④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마감일에 수납된 수수료는 마감일로부터 2일내에 예입한다.
- ⑤ 마감 후에 수납된 현금은 금고에 보관하고 은행에 예입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⑥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. 단, 단체접수의 경우에는 수납총액이 기재된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한다.
- ⑦ 검정수수료는 전문가 종목은 100,000원, 1급 종목은 50,000원, 2급 종목은 25,000원으로 하며 필기와 실기를 구분하여 보게 될 때는 각각 1/2의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다.

제 4장: 자격 유효기간 및 상실

제14조 (유효기간)

청소년행복명상코치 자격은 취득 시 부터 3년 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 시 재단에서 실시하는 청소년행복명상코치 윤리교육을 이수하고 재단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한 후 자격 재발급을 하여야 하며 (재)행복마을은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 없이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.

제 15조 (자격 효력정지)

코치로서의 명예와 위신을 추락시킨 경우, 검정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과 윤리위원회의 동의에 의해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